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234호
나. 발 의 자 : 서상열 의원(찬성자 37명)
다. 발의일자 : 2024년 10월 16일
라.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2. 제안이유

○ 최근 상암경기장 등 일부 체육시설들의 잔디를 포함한 시설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시설을 이용하는 선수들의 경기력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립체육시설의 잔디 등 시설관리 · 운영 예산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장이 시립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시장이 시립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운영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명문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나. 관리·운영의 일반원칙(안 제3조)

○ 현재 서울시 시립체육시설은 직영시설 7곳, 대행·위탁 등 8곳으로 총 15개 시설이 운영 중임.

이 중 서울시설공단의 대행으로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장충체육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잠실주경기장, 목동주경기장 등 7개 시설을 직영하고 있음.

○ 최근 월드컵경기장의 잔디 부실 관리로 체육시설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고, 체육시설 관리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시장은 시립체육시설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보수 등 관리·운영 예산의 적극적인 편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3장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맞게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제3장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맞게 하여야 한다.

○ 현재도 2024년 기준 약 478억 1천1백만원이 일반회계와 체육진흥기금을 통해 체육시설 관리·운영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시설 개보수 예산도 포함되어 있음.

다만 조례 개정을 통해 시장이 체육시설 관리 ·운용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선언적 의미를 부여하는 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시립체육시설 현황>

연번	관리부서	시설물명	연면적(㎡)	준공년도	운영자	
1	체육정책과 (3개 시설)	서울월드컵경기장	166,678	2001	대행	서울시설공단
2		고척스카이돔	83,476	2015		
3		장충체육관	11,399	1963		
4	체육진흥과 (1개 시설)	산악문화체험센터	2,197	2020	위탁	박영석산악문화진흥회 .마포구체육회
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11개 시설)	잠실 주경기장	100,151	1984	직영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6		잠실 실내체육관	26,095	1979		
7		잠실 제1수영장	22,479	1980		
8		목동 주경기장	22,124	1989		
9		목동 야구장	19,114	1989		
10		구의 야구장	17,330	2008		
11		신월 야구공원	18,947	2008		
12		잠실 야구장	45,312	1982	위탁	㈜LG스포츠· ㈜두산베어스
13		목동 빙상장	14,700	1989		㈜와이키키신사점
14		효창운동장	28,524	1960		서울시축구협회
15		잠실 제2수영장	6,021	1979	무상사용	서울시 교육청

<시립체육시설 예산(안)>

구분	부서명	사업명	'25년 제출예산	'24년 본예산	증감
총계			54,229,791	47,810,849	6,418,942 (↑13.4%)
일반 회계	소계		44,930,441	39,579,175	5,351,266 (↑13.5%)
	체육정책과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	18,544,103	13,634,279	4,909,824
	체육정책과	고척스카이돔 운영	11,514,190	11,413,253	100,937
	체육정책과	장충체육관 운영	2,828,442	2,739,191	89,251
	사업소	시설물 관리물품 구입	775,340	124,600	650,740
	사업소	잠실종합운동장·구의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7,453,067	6,990,124	462,943
	사업소	목동운동장·신월야구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1,564,067	1,537,928	26,139
	사업소	목동운동장·신월야구장 시설 개보수	2,251,232	3,139,800	△888,568
체육 진흥 기금	소계		9,299,350	8,231,674	1,067,676 (↑13%)
	체육정책과	고척스카이돔 시설 개선	2,208,850	2,236,674	△27,824
	사업소	야구장 시설 개보수	2,519,500	3,033,000	△513,500
	사업소	잠실종합운동장 등 노후체육시설 개보수	4,571,000	2,962,000	1,609,000

※ 2024년 대비 시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예산은 증가되는 추세이며, 현재 2025년 예산안 심사 중으로 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

전문위원	임창균(2180-8113)	입법조사관	박지혜(2180-8115)

시의회 의안 처리현황 관리카드

의안번호 2234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서상열 의원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4. 10. 1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제안이유〉 ○ 최근 상암경기장 등 일부 체육시설들의 잔디를 포함한 시설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시설을 이용하는 선수들의 경기력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립체육시설의 잔디 등 시설 관리·운영 예산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 입법 요지〉 ○ 시장이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 신설(안 제3조제1항)
추진경과	○ 2024. 10. 16. 조례안 발의(발의자 : 서상열 의원) - (찬성자) 김길영, 남창진, 문성호, 이병도, 이성배, 홍국표 의원 등 37명
부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지자체가 체육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시설운영을 위한 적정수준의 예산확보는 선수들과 시민들의 쾌적한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함
대응방안	○ 해당없음
상임위 처리결과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향후계획	○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

담당부서	체육정책과	팀장	남규하(☎2133-2677)	담당	방준흠(☎2133-2678)